

# 정 관

# 정관

제정 2014. 12. 01.

개정 2015. 11. 19.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2951호

개정 2015. 12. 15.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3255호

개정 2017. 01. 23.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259호

개정 2018. 01. 18.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235호

개정 2019. 02. 18.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578호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한국 프로스포츠 수준향상과 저변확대는 물론 국제교류 등 프로 스포츠를 통해 국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을 도모하여, 스포츠 활성화와 지역 사회 발전 및 국제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프로스포츠협회 (영문표기는 Korea Professional Sports Association, 이하 “협회”)이라 한다.

**제3조(소재지)** 협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위치하며, 필요시 지부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협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프로스포츠 저변확대, 공정성 제고 및 마케팅 활성화 지원 사업
2. 프로스포츠 전문인력 양성 사업
3. 4차 산업 등 프로스포츠 분야 미래전략 사업
4. 프로스포츠와 관련한 제반 행정과 지원업무
5. 프로스포츠에 관한 국제적인 교류와 그와 관련된 사업
6. 성과평가 등 주최단체 지원 사업 수행 지원
7. 기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및 수익사업

##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자격)** 협회 회원의 자격은 대한민국 내 프로스포츠 단체로 하되, 이사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상세 자격기준을 제정한다.

**제6조(회원의 가입)** 협회의 신규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회원자격을 양도 양수하고자 할 경우, 이사회에 정하는 별도의 규정에 의거하여 신청하고 이사회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평등하게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제4조에서 정한 사업에 참여할 권리
2. 총회에서 의결권 및 발언권
3. 협회에 대하여 건의 및 소청을 제기할 권리
4. 기타 협회의 정관과 규정이 정하는 권리

**제8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협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연회비 납부
2. 제4조에서 정한 사업 참가
3. 협회에서 개최하는 국내외 스포츠 관련 이벤트 참가
4. 사업에 대한 계획 및 집행 등 협회에서 요구하는 자료 제출
5. 단체장, 임원 등 주요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협회 통보
6. 기타 협회의 정관과 규정이 정하는 사항

**제9조(회원의 자격상실)**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 자격이 상실된다.

1. 탈퇴
2. 해산 또는 파산선고
3. 제명

② 회원이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탈퇴 희망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원이 협회의 명예를 손상 또는 협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거나,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이사회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당회원을 제명할 수 있으며, 해당 회원에게는 이사회 및 총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회원의 자격이 상실될 경우, 회원이 납부한 금품은 반환하지 않는다.

**제10조(회원의 상벌)** ① 협회는 프로스포츠발전에 공적이 있는 회원 및 개인을 포상할 수 있으며, 물의를 일으켜 프로스포츠의 품위를 손상시킨 회원 및 개인을 징계할 수 있다.

② 회원 및 개인의 포상과 징계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제3장 임원

**제11조(임원의 종류와 수)** ① 협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인
2. 상임이사 겸 사무총장 : 1인
3. 이 사 : 20인 이내(회장 및 상임이사 포함)
4. 감 사 : 1인

② 상임이사를 제외한 모든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제12조(임원의 선출)** ① 회장은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 후,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이사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출하며, 각 회원의 사무총장 또는 전무이사급 각 1인 및 문화체육관광부 소관부서 국장(급)을 당연직 이사로 한다. <개정 2019.02.18.>

③ 상임이사는 회장의 제청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 제13조(임원의 임기)** ① 제11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 ② 당연직 이사 이외 임원의 결원이 발생할 시에는 2개월 이내에 보선하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단, 협회 설립에 따라 임명되는 1기 임원의 임기 기산일은 협회 출범일로 한다.
- ③ 상임이사는 제청한 회장의 임기와 같이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모든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며, 이 정관에서 정하는 책무와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의결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협회의 회계 및 재정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한 경우에는 총회 및 이사회에서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협회의 재정 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총회 및 이사회 회의록에 서명 날인하는 일

④ 임원이 공소제기되어 구금상태에 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제15조(임원의 대우)** ① 회장을 비롯한 비상임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 및 이사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임이사는 보수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여 보수를 지급한다.

**제16조(임원의 자격)**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17조(임원의 해임)** ①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임원을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협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를 한 경우
3. 협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심신상의 이유로 직무의 집행을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5. 직무상의 의무 위반 또는 임원으로서 부적격한 행위가 있었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임원을 해임하려고 할 때는 총회에서 해당 임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③ 해임이 의결되면, 당해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제18조(회장 사고 또는 궐위시 조치)** ① 회장이 사임, 해임 등의 사유로 궐위되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사회에서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직무대행자를 지명한 경우 그에 따르고, 지명된 직무대행자가 없는 경우 이사회에서 직무대행자를 선출하여 회장직을 대행토록 한다.

③ 제1항의 직무대행자는 조속한 시일 내에 후임 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 제4장 총회

**제19조(총회의 구성)** ① 회원의 의결권은 회원을 대표하는 자가 이를 행사한다.

② 총회는 각 회원의 대표자가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결의 또는 의결권의 대리행사도 허용된다.

**제20조(총회의 권한)**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회원자격의 취득, 변경, 정지, 제명
4. 회원별 연회비액에 관한 사항
5. 협회 재산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협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7. 기타 총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중요한 사항

**제21조(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회장이 이사회를 거쳐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마다 1회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3. 제14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④ 제3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14일 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⑤ 회장은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기하여 회의 소집일 7일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집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⑥ 총회는 제5항의 통지사항에 대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회원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회원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2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총회의 소집권자가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자 중 최연장자가 임시 의장이 되어 당해 임시 총회 의장을 선출한다.

**제23조(총회의 의결정족수)** 총회는 이 정관에서 다르게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의장 및 회원 자신과 협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25조(총회의 의사록)**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 제5장 이사회

**제26조(이사회 구성)** ① 이사회는 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② <삭제 2019.02.18.>

**제27조(이사회 권한)**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사업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재산의 관리, 취득, 처분, 제한, 채무의 부담에 관한 사항
4. 각종 규정의 제정 및 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7. 회장 또는 감사가 부의하는 사항 및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명의로 제출한 사항
- 8. 기타 이사회 승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중요한 사항

**제28조(이사회 소집)** ①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되, 년 2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회장은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경우 및 제14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경우 소집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사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이사회 소집일 7일 이전에 목적사항을 명기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이사회 소집권자가 제2항의 소집요구를 기피함으로써 14일 이내에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9조(이사회 의결방법)**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회 의장은 회장이 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출석이사들이 호선하여 정한 자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회는 제28조 제3항에 의하여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단, 재적이사 전원출석에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미리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의결할 수 있다.

④ 이사회에는 각 이사가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결의 또는 의결권의 대리행사도 허용된다.

**제30조(이사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과 출석이사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 제6장 기구 및 조직

**제31조(기구 조직의 구성)** ① 협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협회는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 및 협의조정체 등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제4조 1호 및 본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프로스포츠부정방지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02.18.>

④ 조직 및 기구의 목적과 기능은 별도의 규정에서 정한다.

## 제7장 재산과 회계

**제32조(재산)** ① 협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법인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 및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3. 보통재산 중 이사회 의결을 거쳐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재산

③ 단, 설립시의 재산은 [별표 1] 재산목록과 같다.

**제33조(재정)** 협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운영된다.

1. 사업 수입금
2. 회원 납부금(입회금 및 연회비)
3. 재산운영에 따른 수익금
4. 기부금 및 찬조금
5. 기타 수입금

**제34조(회계)** ①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② 사업계획 및 예산은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결산보고서상에 기재되는 재산, 재정, 회계 등의 사항의 주요한 변화에 대해서는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 제8장 보칙

**제35조(정관의 변경)** 본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 후 총회에서 재적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6조(협회의 해산)** ① 협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협회를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협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기증하기로 한다.

**제37조(규정의 제정)** 이 정관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정관에 없는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정관의 효력)**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법원에 등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2015.11.1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함과 동시에 시행한다.

부칙<2015.12.15.>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함과 동시에 시행한다.

부칙<2017.01.23.>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함과 동시에 시행한다.

부칙<2018.01.18.>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함과 동시에 시행한다.

부칙<2019.02.18.>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함과 동시에 시행한다.